

# MG재형저축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금고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MG재형저축 특약,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MG재형저축
- 상품의 특징 :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근거하여 서민·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절세상품

## 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구분	내용				
가입대상	MG재형저축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1. <b>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</b> 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위 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<b>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</b> 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				
제출서류	예금 신규신청시 관할 납세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<b>소득확인증명서</b> 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				
계약기간	<b>7년</b> (계약기간 연장시 최대 10년까지 가입가능)				
계약기간 연장	○ 한 차례만 3년 범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○ 계약기간의 연장은 예금의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				
납입한도	<b>분기별 300만원</b> (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재형저축을 합산)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				
상품 유형	○ 이 예금 가입시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셔야 합니다. 1. <b>MG재형저축(A형)</b> 2. <b>MG재형저축(B형)</b> [ 상품유형 간략비교 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MG재형저축(A형)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ce4d6;">MG재형저축(B형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가입 후 3년간 고정이율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3년 후부터 매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매 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상품유형은 계좌별로 지정하며 지정하신 상품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	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- 가입 후 3년간 고정이율로 적용 - 3년 후부터 매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	- 매 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
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			
- 가입 후 3년간 고정이율로 적용 - 3년 후부터 매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	- 매 1년마다 변동이율 적용				

<p>이자 계산</p>	<p>이 예 금의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예금지급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용합니다. 다만, 특약 제7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제2호나목의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단리로 적용합니다.</p>																
	<p>○ 이율표 참조</p> <p>○ 기본이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1 472 1501 790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31 472 938 528">MG재형저축(A형)</th> <th data-bbox="938 472 1501 528">MG재형저축(B형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31 528 938 64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36개월 이율)을 3년간 적용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938 528 1501 64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1년간 적용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645 938 79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경과 이후 매 1년(회전주기)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적용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938 645 1501 79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이후에는 매 1년(회전주기)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적용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중도해지이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1 891 1501 130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31 891 938 947">MG재형저축(A형)</th> <th data-bbox="938 891 1501 947">MG재형저축(B형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31 947 938 106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계약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938 947 1501 106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1 1064 938 130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,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적용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938 1064 1501 130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(사망, 해외이주 등)로 특별해지하는 경우(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시)에는 상품 유형별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.</p> <p>※ 국세청의 가입대상 부적격 판정으로 인하여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새마을금고가 국세청에게서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상품 유형별 기본이율을 적용하며,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해지일의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<b>예금 해지일에 고시된 온라인보통예탁금의 이율을 적용</b></p> <p>○ 만기후이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1 1742 1501 190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31 1742 938 1798">MG재형저축(A형)</th> <th data-bbox="938 1742 1501 1798">MG재형저축(B형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31 1798 938 1906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938 1798 1501 1906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36개월 이율)을 3년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1년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경과 이후 매 1년(회전주기)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이후에는 매 1년(회전주기)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적용</li> </ul>	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계약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,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</li> </ul>	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</li> </ul>
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36개월 이율)을 3년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1년간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경과 이후 매 1년(회전주기)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이후에는 매 1년(회전주기)마다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기본이율(이율표상의 12개월 이율)을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
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중도해지시 계약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계약일로부터 3년 및 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, 종료되지 않은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종료된 회전주기에 대하여는 해당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
MG재형저축(A형)	MG재형저축(B형)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회전주기 개시일에 고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
<p>이자 지급</p>	<p>예금 해지시 일시 지급</p>																
<p>계약 해지</p>	<p>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 가능</p>																

<p>세울 적용</p>	<p>○ 세울의 감면 : 조세제한특례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b>(다만, 농어촌특별세는 부과)</b>          ※ 농어촌특별세 : 감면받은 소득세의 10%(이자소득의 1.4%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</li> <li>2.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(사망, 해외이주 등)로 해지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예금 해지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</li> <li>3. 국세청의 가입대상 부적격 판정 통보로 인하여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일 부터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</li> </ol> </div> <p>○ 일반 과세 :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<b>일반과세합니다.</b>          ※ 일반과세 : 이자소득의 15.4%를 과세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계약기간 만기일(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기일) 이전에 예금을 해지하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</b></li> <li>2.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</li> <li>3. 국세청의 가입대상 부적격 판정 통보로 인하여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예금 해지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</li> </ol> </div>
<p>제한 사항</p>	<p>○ 이 예금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 ○ 이 예금은 분할(부분해지)할 수 없습니다.</p>
<p>예금자 보호여부</p>	<p><b>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,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까지”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,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</b>          ▶ 소정의 이자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.          ▶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☎02)2145-9114, <a href="http://www.kfcc.co.kr">www.kfcc.co.kr</a>)</p>

### 3 유의사항

- 만기전 해지할 경우 기본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국세청에서 예금 가입일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 예금의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에 예금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납입이 중단되며 새마을금고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.
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새마을금고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(관련 법령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)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알려야 합니다.

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 저희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([www.kfcc.co.kr](http://www.kfcc.co.kr))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